

「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 → 2024. 11. 25. 개정 판 (시행 2024. 11. 25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83/compare?from=1310&to=164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6:40:51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교무부처장(서기), 기획처장, <u>스미스학부대학장</u> , 학사지원팀장, 교수(6)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-04-29>	제2조(구성)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교무부처장(서기), 기획처장, <u>교양교육원장</u> , 학사지원팀장, 교수(6)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-04-29>
제8조(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)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6-03-01>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<u>스미스 교양대학장</u> 으로 한다.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<u>교양대학 부학장</u> , 교무부처장, 교육부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<u>교양대학장</u> 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.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.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, 간사는 <u>교양대학 교학팀장</u> 이 맡는다.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16-08-01>	제8조(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)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6-03-01>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<u>교양교육원장</u> 으로 한다.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<u>교양교육부원장</u> , 교무부처장, 교육부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<u>교양교육원장</u> 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.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.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, 간사는 <u>교양교육원 교학팀장</u> 이 맡는다.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16-08-01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스미스학부대학장"을 "교양교육원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스미스 교양대학장"을 "교양교육원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교양대학 부학장"을 "교양교육부원장"으로 하고, "교양대학장"을 "교양교육원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"교양대학"을 "교양교육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